

# 의안 검토 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6년 11월 27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안문환

#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개정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여유자금의 예탁의무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)

## 3.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24일과 2005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, 「재해구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,

- 「재해구호법」 “제15조, 제16조”를 “제14조, 제15조”로, 「재해구호법」 시행령 “제23조”를 “제12조”로 법 조문을 정비하고 (안 제1조)
- “법 제16조”를 “ 「재해구호법」 제15조”로 하고(안 제2조)
- 기금 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며(안 제3조)
-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(안 제4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직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“보건복지여성국장”에서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으로, 분임기금운용관은 “복지정책과장”에서 “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”으로, 기금출납원은 “담당사무관”에서 “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”(안 제6조) 등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.